

■ 업무내용

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·정비하고 개량·보수·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, 건축물의 경우 증축·개축·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·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·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·보수·보강공사

■ 등록기준

1. 자본금

| 법인 | 개인 |
|--------|--------|
| 2억원 이상 | 2억원 이상 |

2. 기술능력

| 기술자격 |
|--|
|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명 이상 |

※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, 「국가기술자격법」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.

3. 공제조합

2024.07.29 기준

| 업종 | 1좌당 | 자본금 | CC등급 이상 | C등급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시설물유지관리업 | 947,723원 | 2억원 | 64좌 (60,654,272 원) | 80좌 (75,817,840 원) |
| ※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 동일 | | | | |

4. 시설·장비

| 사무실 | 장비 |
|---|--|
| 사무실은 「건축법」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,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·도 안에 있어야 한다.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육안검사 : 돋보기·망원경·카메라·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비파괴시험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반발경도측정기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: 망치·체인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자기감응검사: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: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(resistivity), 전위차측장치(half cell potential) |
| ※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| |

신규등록 소요기간

평균 30~45일 이내 소요